



NARS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4호 2016. 9. 7.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쟁점과 과제

조규범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2016. 9. 7.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6. 6. 1.
초고 작성기간	2016. 7. 1. ~ 2016. 8. 19.
초안 검토	법제사법팀 심정희 팀장
실무위원회 검토	2016년 8월 23일(화) 오전 10시 - 실무위원: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박규찬, 이상팔 팀장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6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송대호 경제산업조사실장 정성희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재유 기획관리관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

발 간 사

국정감사는 매년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수단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또는 수년간에 걸친 주요 현안들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수행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여 정부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언급된 사항들 중 중요사항을 선별하여 정부의 정책적 개선노력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다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선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활용할 쟁점발굴에 유용했다는 평가에 힘입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점사업으로 확대·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이전에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요한 사항들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점검함으로써 국회의원과 보좌진 여러분의 국정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 성 호

요 약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헌법재판관’이라 함) 선임은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는 물론 헌법해석의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법조출신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삼부(三府)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중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하고, 국회가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 삼부(三府)에 의한 선출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현행 삼부선출형 또는 지분분할식 지명·선출 방법과 같은 형식적 균형추구의 임명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2015년의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되면서 2014년 국정감사에 이어 2년 연속 국감지적사항이 되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만 반복하여 답변하였을 뿐 어떠한 실무적인 조치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이는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방식을 규정한 헌법이 개정될 때에만 의견을 내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헌법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방식은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문제는 현대적 권력분립의 원리에 합당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민주적 정당성 및 전문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는 법률적 지식 차원의 전문성은 물론 헌법적 차원의 전문성이 중요한 고려의 요소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헌법이나 헌법재판이 가지는 특수성과 기능 내지 사명에 대한 고려와 함께 독립성에 대한 기대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그동안 제시된 개선방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장인 법학교수에게 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헌법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라면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헌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개선방안으로 사법부의 내부합의체에서 재판관의 선출을 주관하는 방식이나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이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거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앞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차 례

□ 요약

I. 평가 배경 / 1

- 1. 배경 1
- 2. 관련 법령 및 제도 3

II.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 6

-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6
- 2.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8

III.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9

- 1.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9
- 2.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0

IV. 개선방향 / 12

- 1.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의 확대 12
- 2.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의 개선 17

□ 참고문헌

I. 평가 배경

1. 배경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헌법재판관’이라 함)의 구성은 헌법재판의 실질적 기능 수행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개혁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방식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이었고, 그동안 헌법학계 등 많은 관련 단체에서 이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개정과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법조출신 인물들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관련하여 헌법 자체나 헌법재판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측면, 헌법재판과 헌법 자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 내지 사명 측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녀야 할 전문적 능력의 관점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¹⁾
- 헌법은 일반 법규범과 달리 추상성과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면서 정치적 또

1) 김문현·정재황·황수웅·음선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 제16권, 헌법재판소, 2005, pp.99-104 참조.

는 정책적 고려도 하여야 하는데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법관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로서 다원성의 반영을 요구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반할 수 있음
- 헌법재판에서의 전문성은 순수한 절차법적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헌법이론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관의 자격을 요할 것이 아니라 헌법의 전문가도 그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삼부(三府)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중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하고, 국회가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 삼부에 의한 선출방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삼부선출형 또는 지분분할식 지명·선출방법과 같은 형식적 균형추구의 임명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²⁾
 - 대법원장에 의한 재판관 3인의 지명제도는 대통령의 대법원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인물들을 재판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
- 헌법재판관 선임의 중요성은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 있음
 -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2) 양건·김문현·남복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연구 제10권, 헌법재판소, 1999, p.14.

의 신뢰는 물론 헌법해석의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질서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의 문제는 현대적 권력분립의 원리에 합당한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민주적 정당성 및 전문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명확한 확보를 위하여는 국민의 참여에 의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임
- 또한, 헌법재판관 자격의 개방화를 통한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일 것임

2. 관련 법령 및 제도

- 헌법재판관 자격에 관한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1조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에서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게 함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이와 같이 현행 헌법 및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조인이 아닌 자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가지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구조임
-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다수당에 의한 헌법재판기관의 석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삼부(三府)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중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설계하였음
- 즉, 대통령이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하고 국회가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며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는 삼부(三府)에 의한 선출방식을 취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II.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 2015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의 선발 절차와 출신 대학 및 편중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결정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선발 절차, 출신 대학 및 지역 편중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

- 피감사기관 : 헌법재판소
-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 헌법재판소 회의실
- ○○○ 의원
 - 헌법재판관의 다양화 문제가 있음
 - 서울법대 출신의 법조 엘리트로 구성된 부분이 다양성이 적어서 국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기초로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에 너무 편향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서 헌법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고 봄
 -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4명의 헌재소장 전원이 서울대 출신이고 33명의 역대 헌법재판관 중 10명만이 비서울대 출신임
 - 헌법재판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다루므로 고도의 헌법철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관 자격자만을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법률적 지식 차원의 전문성이 아니고 헌법재판의 특수성, 여러 가지 사명·기능을 고려해서 헌법적 차원의 다른 전문성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고 지적함
- ○○○ 의원
 - 전 헌법재판소장도 재판관 9명 중에서 3명은 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닌 다양한 직역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
 - 헌법재판관의 다양화가 필요함

- 2015년의 국정감사에서 의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으로 2년 연속하여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의 출신 편중문제에 개선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음

대상기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연구관의 서울권 대학 출신 편중 문제, 법원 및 사법고시 출신 편중 문제 등에 대한 개선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피감사기관 : 헌법재판소
- 일시 : 2014년 10월 17일(금)
- 헌법재판소 회의실
- ○○○ 의원
 - 제18대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오면 시종일관 하던 이야기가 헌법재판소 다양성과 대법원과의 관계였음
 - 법원 출신 중에서 시쳇말로 제일 잘나가는 사람들은 대법관이 되고, 그게 좀 안되면 헌법재판관에 간다, 이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속설이 있음
 -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경험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 주로 10년, 20년, 30년 일하다가 잠시 왔다가 돌아가든지 아니면 대법관 못 되면 헌법재판관으로 오든지 이러니까 여기 헌법재판소의 직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출장소라는 증명을 헌법에서 딱 규정하고 있음
 - 헌법에 규정된 독소조항을 바꾸려는 노력을 헌법재판소조차도 별로 안하고 있음
 -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헌법재판관부터 헌법연구관 또 사무처장 다 법원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인적 구성이 그렇게 종속되어 있음
 - 지금 헌법재판관을 보면 전부 판사, 검사 - 판사 일곱 분, 검사 두 분임
- ○○○ 의원
 - 헌법재판관의 구성 문제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2.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2015년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향후 헌법개정 논의가 있을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답변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5)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헌법재판소 결정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선발 절차, 출신 대학 및 지역 편중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도 국정감사시 보고할 것	○ 우리 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및 헌법연구관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국회를 비롯한 각계의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력을 지속하여 오고 있음 ○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상 그 자격을 법조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헌법개정 논의가 있을 시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재판소 자체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4)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연구관의 서울권 대학 출신 편중 문제, 법원 및 사법고시 출신 편중 문제 등에 대한 개선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향후 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재판소 자체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음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2015년의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만 반복하여 답변하였을 뿐 이와 관련한 어떠한 실무적인 조치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음
- 2014년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향후 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재판소 자체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함
- 2015년의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상 그 자격을 법조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시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재판소 자체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음”이라고만 답변함
-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2015년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이나 법안 개정 등 실무적 개선노력이 부족해 보임
- 국정감사 지적 이후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상태임³⁾

3) 제19대 국회부터 대법관 구성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개선사항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는 김종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0306, 2012.6.25.),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01890, 2012.9.20.), 장윤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912415, 2014.11.11.), 서기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 헌법재판소의 시정 및 처리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헌법개정과 연계된 사항이긴 하지만,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움
-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향후 헌법재판관 자격이나 구성방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또다시 제기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방식이 헌법사항이므로, 헌법개정 시에만 의견을 내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헌법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방식은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헌법학계에서 주장되는 헌법재판관의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사법부의 내부합의 체에서 재판관의 선출을 주관하는 방식⁴⁾이나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이 사법부 외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식⁵⁾ 등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개정이 없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부족해 보임
- 또한, 특정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편중된 헌법재판관 구성의 개선에 관한

1913942, 2015.2.9.) 등이 있었으나,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은 발의된 바 없음.

4) 성낙인, 「헌법재판소 인사와 임명 절차상의 문제점」, 『시민과 변호사』 제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1994, p.74.

5) 최대권, 「헌법재판소의 정치학 - 그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 『법학』 제3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p.119.

사항은 헌법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규정 내에서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활동가 중 법관자격 소유자 등에 대한 배려, 출신학교 다양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의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임

- 결국 헌법을 개정할 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구성방식의 문제점은 그대로 노정하게 되어 헌법과 헌법재판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헌법재판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헌법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헌법개정 시에만 의견을 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헌법개정이 없다면 헌법재판관 자격과 구성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조차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 헌법개정의 시기가 언제일지라도 헌법개정시 필요한 헌법재판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법률개정 방안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 필요함에도 2년 연속 개헌 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은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흡하다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헌법개정이 없더라도 단기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규정 신설 등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헌법개정 시의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IV. 개선방향

1.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의 확대

-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와 같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법관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기본원리로서 다원성의 반영을 요구하는 민주적 정당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즉,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특정 사회계층이 헌법재판권을 전유하면서 헌법의 최종해석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를 반영하는데 소홀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가치의 전제’로 귀결될 위험성이 높다는 비판임⁶⁾
- 현행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헌법재판관의 전문적 능력의 관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즉, 기존에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절차법적인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했으나, 헌법재판에서 절차적 전문성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수한 절차법적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헌법이론의 뒷받침과 그 연관 하에 있는 전문성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임⁷⁾
- 헌법재판관의 자격 문제는 법률적 지식 차원의 전문성은 물론 헌법적 차원의 전문성이 중요한 고려의 요소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6) 정재황,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문제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pp.99-100.

7) 정재황, 앞의 논문, p.100.

- 헌법이나 헌법재판이 가지는 특수성과 기능 내지 사명에 대한 고려와 함께 독립성에 대한 기대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⁸⁾
-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관련하여 해외의 입법례에서는 법관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두 개의 재판부로 구성되는데 각 재판부는 8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여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Richter)이어야 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⁹⁾
 - 각 부의 재판관들 중 3명은 연방최고법원들, 즉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한 법관들 중에서 선출되도록 하고 있음¹⁰⁾
 - 독일에서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만40세 이상이어야 함¹¹⁾
- 프랑스는 프랑스 헌법에서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대한 규정¹²⁾을 두고 있지만 당연직과 임명직 헌법재판관 9명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이에 관한 실정법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단지 헌법에서 전직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을 종신의 당연직 재판관으로¹³⁾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조직법에서 헌법재판관은 프랑스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향유자여야 한다¹⁴⁾는 점이 유일한 자격규정이라 할 수 있음

8) 한동훈 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 헌법재판연구원, 2011, pp.30-31.

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조제1항 및 동조제2항.

1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조제3항.

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조제1항.

12) 프랑스 헌법 제7장제56조 내지 제63조.

13) 프랑스 헌법 제56조제2항.

14) 프랑스 헌법재판소 조직법 제10조.

- 따라서 프랑스의 헌법재판관은 자격요건으로 법조인 출신임이 요구되지 않음은 물론 법률가로서의 교육을 받은 이력이나 법률가의 소양 또는 법률가로서의 경력 등이 요구되고 있지 않음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총 12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경력 15년 이상의 공인된 자격을 가진 법률가인 법관, 검사, 대학교수, 공무원, 변호사 중에서 임명됨¹⁵⁾
 - 스페인 헌법재판관의 대부분은 법학교수나 법관 출신으로 구성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14명의 헌법재판관과 6명의 예비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법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여야 하며 그 전공을 이수할 것을 요하는 직종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함¹⁶⁾
 -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대통령이 선임하게 되는 6명의 헌법재판관과 3인의 예비재판관은 법관, 행정공무원, 법학교수 중 적어도 하나의 직에 있던 사람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¹⁷⁾
- 미국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연방대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미국 헌법을 비롯한 어느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경험이 전무한 자라고 하더라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역대 대법관들은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판사로 재직할 경력을 가진 자들이었음

15) 스페인 헌법 제159조제1항.

16) 오스트리아 헌법 제147조제3항.

17) 오스트리아 헌법 제147조제2항.

- 캐나다의 경우 헌법에서는 총독이 대법관 등의 법관을 임명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 대법관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¹⁸⁾
 - 대법관의 자격에 대하여는 캐나다 대법원법 제5조가 정하고 있는데, 주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a province)의 판사이거나 판사였던 자 또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음¹⁹⁾
 -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 중 3명은 반드시 퀘벡 주의 항소법원, 고등법원, 변호사 중에서 임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²⁰⁾
- 일본의 경우 재판소법에 따라 최고재판관은 식견이 높고 법률에 관하여 소양이 있는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명하는데 이들 중 최소한 10인은 고등법원의 원장 또는 판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또는 고등법원의 원장, 판사, 간이재판소 판사, 검찰관, 변호사, 별도로 법률에서 정하는 대학의 법률학 교수 또는 준교수의 직(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에 20년 이상 있던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²¹⁾
-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헌법재판관 자격과 관련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의 사례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18) 캐나다 헌법 제5조.

19) 캐나다 대법원법 제5조.

20) 캐나다 대법원법 제6조.

21) 일본 재판소법 제41조제1항.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해외 입법례 비교>

국가명	자격요건	근거규정
독일	법관	연방헌법재판소법
프랑스	자격요건 없음	자격규정 없음
스페인	판사, 검사, 대학교수, 공무원, 변호사	헌법
오스트리아	법관 외에 법학, 정치학 전공자 인정	헌법
미국	자격요건 없음	근거규정 없음
캐나다	판사, 변호사 자격자	대법원법
일본	판사, 검찰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재판소법

- 그동안 제시된 개선방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장인 법학교수에게 재판관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헌법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라면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방안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이나 「변호사법」의 개정에서 법관의 자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통하여도 논의가 가능한 사항임²²⁾
-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헌법 제111조제2항에서 ‘법관의 자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법」에 자격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2)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헌법재판관만의 자격을 위하여 「법원조직법」에서의 법관의 자격을 개정할 필요까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헌법재판관만의 자격이 아니라 법관의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임.

2.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의 개선

- 삼부(三府)에 의한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의 하나는 대법원장의 지명권에 관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법원장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에 의한 선출에 비해 국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견해가 있음²³⁾
 - 또한, 대법원장의 지명권행사는 절대적 권력이므로,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것은 지나친 권력집중이라는 견해도 있음²⁴⁾
- 또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결합에 의해 임명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지명 몫도 대통령과 국회다수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대통령 소속정파에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은 더욱 강화되고 구성에 있어서의 다원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²⁵⁾
- 그 밖에도 권력분립 내지 권력균형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으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는 견해²⁶⁾도 있음

23) 양건·김문현·남복현, 앞의 보고서, p.14.

24) 남복현,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의 개편방향」,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한국헌법학회, 2006, p.400.

25) 김종철,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헌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5, pp.17-18.

26) 김문현·정재황·황수웅·음선필, 앞의 보고서, p.114.

-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별개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헌법체계론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
 -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의한 헌법재판관의 지명은 이와 같은 헌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음²⁷⁾
- 또한, 대법원장에 의한 단독지명은 사법부의 합의체에서 선출할 때에 비해 비슷한 성향의 재판관들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됨²⁸⁾
- 사법부의 개입은 헌법재판소를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구성원의 선출기관이 사법기관이라고 하여 사법기관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사법기관의 성격인정 여부의 본질은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가, 그 기관의 재판업무가 사법적 절차인가, 그리고 그 기관의 재판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가 등에 있다는 견해²⁹⁾도 주목할 만함
-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2개부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 간의 분쟁을 관할함

27)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1, p.110.

28) 김문현·정재황·황수웅·음선필, 앞의 보고서, p.115.

29) 김문현·정재황·황수웅·음선필, 앞의 보고서, pp.115-116.

- 각 부는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서 각각 4인씩 선출함³⁰⁾
 - 이들에 대해 연방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는 실질적 임명권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주도형 선출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됨
- 재판관은 3년마다 1/3이 갱신되는데, 대통령이 3인, 하원의장이 3인, 상원의장이 3인을 임명하고³¹⁾, 9인의 재판관 이외의 전직대통령들은 당연직 재판관이 됨
 -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에서 대통령은 상하원에서 나온 반대표가 양원에서 행사된 표의 5분의 3을 넘을 경우 해당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³²⁾하여 의회의 역할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음
-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임명하는 12인의 재판관에 의하여 구성됨
- 그 중 4인은 하원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제안에 따르고, 4인은 동일한 수 이상의 상원의 제안에 따라, 2인은 정부가, 그리고 나머지 2인은 사법부 총평의회에 의해 제안에 따름³³⁾
 - 스페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법부의 지명권이 의회에 비해 적으며 의회의 제청권 비중이 큼
-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는 1인의 소장, 1인의 부소장, 12인의 재판관 및 6인의 예비재판관으로 구성됨³⁴⁾

30) 독일 헌법 제94조제1항.

31) 프랑스 헌법 제56조제1항.

32) 프랑스 헌법 제13조.

33) 스페인 헌법 제159조제1항.

34) 오스트리아 헌법 제147조.

-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6인의 재판관 및 3인의 예비재판관은 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Bundesregierung)의 제청을 받아 임명함
- 나머지 6인의 재판관과 3인의 예비재판관은 상·하원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미국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상원이 인준해서 대법관을 선출함³⁵⁾
 - 따라서 상원이 인준을 거부하면 지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음
- 캐나다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없지만,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의 임명은 전적으로 행정부가 관장함
 - 특히 영국 여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여왕의 캐나다 추밀원의 조언을 받아 대법관을 모두 임명함³⁶⁾
 - 대법관의 선발은 「캐나다 헌법」보다는 「대법원법」이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대법관 중 3명은 퀘벡 주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임³⁷⁾
-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의 장을 최고재판소 장관이라 하고 그 외의 재판관을 최고재판소 판사³⁸⁾라고 하는데,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국왕인 천황이 임명함³⁹⁾
 - 최고재판소 판사는 내각이 임명⁴⁰⁾하고 천황이 인준⁴¹⁾함

35) 미국 헌법 제2조제2항.

36) 캐나다 헌법 제96조.

37) 캐나다 대법원법 제4조제1항.

38) 일본 재판소법 제5조제1항.

39) 일본 헌법 제79조제1항.

40) 일본 헌법 제79조제1항, 일본 재판소법 제39조제2항.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 해외 입법례 비교>

국가명	구성방식	근거규정
독일	의회 단독선출	헌법
프랑스	입법부/행정부 선임	헌법
스페인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선임	헌법
오스트리아	입법부/행정부 선임	헌법
미국	입법부/행정부 선임	헌법
캐나다	행정부 선임	헌법, 대법원법
일본	내각 선임	헌법, 재판소법

-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관 구성방식에는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재판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당부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서 현재의 대법원장에 의한 독임적 지명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폐지 내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학계에서 논의되는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헌법개정을 요하는 방식과 헌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우선 헌법개정을 전제로 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

41) 일본 재판소법 제39조제3항.

-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표결하되,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중 1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6인 중 2인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절차에서 대법원장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⁴²⁾가 있음
- 또한,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의 보장이라는 양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인 중 1인은 대법원장이 위원장인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그리고 2인은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출모형이라는 견해⁴³⁾가 있음
- 이 밖에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방법처럼 국회에서 9인의 재판관 모두를 선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임하는 방안⁴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⁴⁵⁾, 사법부에서의 재판관선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⁴⁶⁾ 등도 제시되고 있음
- 한편, 헌법개정을 요하지 않는 개선방안으로는 사법부의 내부합의체에서 재판관의 선출을 주관하는 방식⁴⁷⁾,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이 사

42) 차병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방식의 재검토」, 『인권과 정의』 제218호, 대한변호사협회, 1994, p.13.

43) 신봉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선임제도 - 그 비판과 구체적 개선방안」,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소, 1994, pp.432-433.

44) 허영, 앞의 책, p.111.

45) 배상오, 「한국헌법재판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법학연구』 제9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p.18.

46)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제29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1994, p.85.

47) 성낙인, 앞의 논문, p.74.

법부 외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식⁴⁸⁾,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앞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⁴⁹⁾ 등이 있음

- 사법부의 내부합의체에서 재판관의 선출을 주관하는 방식은 대법관 전원과 각급 법원의 법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합의체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이는 가능한 한 사법부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재판관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하고 사법부 전체의 의사를 집약하도록 함으로써 선출에 있어서 보다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모든 법관들이 합의체로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법관 전원과 각급 법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대표하는 일반법관의 대표자들도 참여하는 합의체의 구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⁵⁰⁾
-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사법부 인사로서 법률가가 일부 참석하고 나머지는 교수나 언론인 등 사회지도급 인사로 구성하여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앞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경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중, 1인은 현직 대법관 그리고 2인은 전직 대법관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⁵¹⁾

48) 최대권, 앞의 논문, p.120.

49) 고문현,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5, p.392.

50) 성낙인,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비교헌법적 검토를 통한 대안 모색」, 『현대사회와 법의 발달』(균제 양승두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홍문사, 1994, p.1047.

51) 고문현, 앞의 논문.

-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서 볼 때 헌법재판관의 구성방식은 중·장기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 경우 현행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도를 폐지하고,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와 대통령이 적절한 비율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대법원장의 독임적 지명제도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또는 「법원조직법」의 개정이나 대법원의 규칙 신설 등을 통해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더욱 세련된 헌법재판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는 가운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임

참고문헌

[단행본]

- 정재황, 『헌법재판개론』, 박영사, 2005.
정중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3.
허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11.

[정기간행물]

- 고문현,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헌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한국헌법학회, 2005.
김문현·정재황·황수웅·음선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연구 제16권, 헌법재판소, 2005.
김운용, 『헌법재판의 제도적 개선방향』, 헌법재판자료 제6집, 헌법재판소, 1993.
김종철,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헌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5.
남복현,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의 개편방향」, 『헌법학연구』 제12권 제5호, 한국헌법학회, 2006.
배상오, 「한국헌법재판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법학연구』 제9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성낙인, 「헌법재판소 인사와 임명 절차상의 문제점」, 『시민과 변호사』 제8호, 서울지방변호사회, 1994.
성낙인,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의 비교헌법적 검토를 통한 대안 모색」, 『현대사회와 법의 발달』(균제 양승두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홍문사, 1994.

- 신봉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 선임제도 - 그 비판과 구체적 개선방안』,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소, 1994.
- 양건·김문현·남복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헌법재판연구 제10권, 헌법재판소, 1999.
- 윤명선, 『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제29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1994.
- 전학선, 『프랑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광운비교법학』 제7호, 광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 정재황,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문제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차병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방식의 재검토』, 『인권과 정의』 제218호, 대한변호사협회, 1994.
- 최대권, 『헌법재판소의 정치학 - 그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 『법학』 제3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 한동훈 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 헌법재판연구원, 2011.

[기타문헌]

- 국회사무처, 『2014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4.10.17.
- 국회사무처, 『2015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2015.9.11.
- 헌법재판소,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5.1.
- 헌법재판소,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6.6.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지상파재송신 제도의 개선방안	2016.9.7.	김여라
제2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웹접근성 정책의 개선방안	2016.9.7.	정준화 송시현
제3호	기금 자산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6.9.7.	정도영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제4호

발 간 일 2016년 9월 7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454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508-4240
발간등록번호 31-9735020-001486-14

© 국회입법조사처, 2016

NARS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그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내역을
점검·평가하는 보고서로서
매년 국정감사 이전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